

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사유

지방세법령의 개정·시행(2006.1.1)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함

2. 주요골자

가. 재산세 적용비율을 2005년 50%에서 매년 5%씩 인상토록 한 「지방세법」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함(안 제21조)

▷ 토지·건축물 : 2006년부터 적용비율 매년 5%씩 인상

▷ 주택 : 2007년까지는 50%로 현행 유지하고

2008년부터 적용비율 매년 5%씩 인상

나. 주택분 재산세가 2회에 나누어 고지하는 것을 소액인 5만원 이하인 경우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납기 규정을 신설함(안 제21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 제3조제1항 및 제3항

나. 입법예고 : 2006. 3. 10 ~ 3. 30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4. 검토의견

○ 토지·건축물·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시행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, 이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도로 정비하는 것이며

- 재산세 납기 및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과세누락, 위법, 착오 등으로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·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